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23.12.29 개정, 2024.1.1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건설업 상호시장)과 관련한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구분	당초(개정 전 법률)	개정(현행 법률)
상호시장 전문공사 보호구간	○ 공사에정금액 <u>2억원</u> 미만의 전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u>23년말</u> 까지) * 관련 조문 : 법 부칙(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4항	○ 공사에정금액 <u>4.3억원</u> 미만의 전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u>26년말</u> 까지) * 관련 조문 : 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법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
전문간 공동도급	○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건설공사 공동도급 허용 ('<u>24년부터</u>) * 관련 조문 : 법 부칙(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3항	○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건설공사 공동도급 허용 ('<u>27년부터</u>) * 관련 조문 : 법 부칙(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3항

끝 .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기획재정부장관(계약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조달청장(시설총괄과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한국공항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방위사업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주무관	과학기술서기	전결 2024. 1. 3.
정재엽	관 김태훈	건설정책과장 이익진

협조자

시행 건설정책과-70 (2024. 1. 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962 팩스번호 044-201-5546 / jsm20433@molit.go.kr / 대국민 공개